

#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

사건번호 20 타경 부동산강제(임의)경매

채 권 자 :

채 무 자(소유자) :

매 수 인 이 름 : (주민번호: )

주 소 :

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\_\_\_\_\_는(은)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첨부서류 및 발급관서 안내

1. 부동산목록 1부 (매각물건)
2. 매각허가결정정보 1통
3.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(청사내 1층 무인발급기 또는 3번 창구에서 발급)
4. 매수인 주민등록초본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1통
5. 토지대장등본(대지권등록부 포함)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(부동산소재지 관할 구(군)청)  
[집합건물(아파트)의 경우 대지권 연명부 포함된 토지대장등본 제출 1통임.]
6. 취득세 및 말소등록면허세 영수증 (부동산소재지 관할 구(군)청)  
(말소등록세는 말소 1건당 7,200원 납부)
7. 국민주택채권 (채권금액 : 금 원 (채권번호 : )  
등록세 영수증에 나타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 
(토지: 공시지가\*면적=500만원 이상, 주택 2,000만원 이상,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-별지 참고)
8. 등기신청수수료 - 이전 1건당 18,000원, 말소 1건당 4,000원 ( 토지, 건물 각각임 )  
( 청사 내 1층 경남은행 에서 현금납부 )
9. 우표 - 5,800원 \* 2개 (마산합포구, 마산회원구 소재 부동산은 우표 불요)-우체국  
- 5,800원 \* 1개 및 반송 용봉투 (등기필증 우편 송부시 추가 사항 )
10. 말소할 사항 3부 (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기재)

20 . . .

위 매수인

(서명 또는 날인)

연락처

## ☞유의사항

1. 등기사항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
2.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, 그 채권금액과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함(문의 : 인터넷등기소 1544-0770)

◇ 말소할 등기의 표시 ◇

| 접 수 년 월 일 | 접 수 번 호 | 등 기 의 종 류 | 부 동 산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
※ 등기부 등본을 참조하시어 갑구 → 을구 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

※ 등기의 종류는 가압류,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목적란에 기재된 것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

◇ 예시 ◇

| 접 수 년 월 일     | 접 수 번 호 | 등 기 의 종 류 | 부 동 산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2009. 01. 01. | 12345   | 근저당권 설정   |       |

◆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(시가표준액기준) ◆

| 주 택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토 지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<br>(상가, 근린생활시설) |                   | 상속, 증여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2천이상 5천미만 <sup>1</sup> | $\frac{13}{1000}$ | 5백이상 5천미만 | $\frac{20}{1000}$ | 1천이상 1억3천미만                   | $\frac{8}{1000}$  | 1천이상 5천미만   | $\frac{14}{1000}$ |
| 5천이상 1억 미만             | $\frac{14}{1000}$ | 5천이상 1억미만 | $\frac{35}{1000}$ | 1억3천이상 2억5천미만                 | $\frac{14}{1000}$ | 5천이상 1억5천미만 | $\frac{25}{1000}$ |
| 1억이상 1억6천미만            | $\frac{16}{1000}$ | 1억이상      | $\frac{45}{1000}$ | 2억5천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| $\frac{18}{1000}$ | 1억5천이상      | $\frac{39}{1000}$ |
| 1억6천이상 2억6천미만          | $\frac{18}{1000}$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2억6천이상 6억미만            | $\frac{21}{1000}$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6억이상                   | $\frac{26}{1000}$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